

「산학협력단 회계 비목별 산정 및 집행 기준 안내」

작성일 : 2015.5.11

① **관련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② 비목별 산정 및 집행기준

1. 지출구분 : 산학협력비 (산학협력수익 대응), 지원금(지원금수에 대응) 사업비로 구분

2. 비목별 산정 및 집행기준

① 산학협력비 지출항목

과 목			산정 및 집행기준
관	항	목	
I.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1)	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	연구활동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1)	인건비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	교육과정개발비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	장학금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실험실습비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3.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
	2)	산학협력보상금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4. 학교시설사용료		
	1)	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 기타산학협력비		
	1)	기타산학협력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지원금사업비 지출항목

과목			산정 및 집행기준
관	항	목	
Ⅱ. 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 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사용료 및 연구재료비(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 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등
	2) 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3) 장학금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실험실습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3. 세부 비목 산정 및 집행기준

① 연구비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연구비)

산학협력연구비와 지원금연구비는 각각 산학협력연구수익 및 지원금연구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관련)'에 따른 구분임.

산학협력연구수익과 지원금연구수익은 연구수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이고 지출내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규칙에서는 산학협력연구비도 지원금연구비와 동일한 계정과목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 2012회계연도 이전에 산학협력연구수익 또는 지원금연구수익으로 처리한 연구과제에 대해 2013회계연도에 지출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연구비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 기존대로 '인건비' 또는 '제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한시적 적용)

①-1.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총액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와 구분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의하면 학생연구원이란, 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을 의미함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연구비 인건비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연구비 내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연구비 내 학생인건비

①-2.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는 지출시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회계처리 시에는 기기·장비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는 기계기구 또는 집기 비품으로,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중 건축비 및 부지 매입·조성비는 각각 건물(또는 건설중인자산)과 토지로 기재

「연구장비·재료비의 계정과목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 목	세 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직 접 비	연구 장 비 재 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 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 시 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 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기기·장비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기계기구 또는 집기 비품
			기기·장비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중 건축비	건설중인 자산 또는 건물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중 부지 매입·조 성비	토지
			연구시설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연구장비·재료비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연구장비·재료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장비·재료비	

①-3 연구활동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한 연구활동비는 회계처리규칙과 일치하나 산학협력단은 기업체 등과 계약 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서 제시한 세목 외 다양한 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경우 연구활동비로 통합하여 처리함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연구활동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연구활동비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연구활동비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연구활동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활동비

①-4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과제추진비는 2012년 5월 개정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신설된 세목으로 개정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계처리규칙에 따르면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과제추진비는 신설 취지에 맞게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

「연구과제추진비의 계정과목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세부내용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연구과제추진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비용	기계기구 또는 집기비품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유지비용	연구과제추진비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①-5 연구수당과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와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정과목 구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	위탁연구개발비

② 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운영비, 지원금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운영비와 지원금교육운영비는 인건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교육운영비로 구분되며 연구비와 달리 정부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관리규정이없으므로 회계처리규칙에 의해 구분함

③ 지식재산권비용

③-1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간접비수익이 아닌 수익을 재원으로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와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처분원가를 계상. 특허는 출원 후 보정을 거쳐 등록되기까지 대략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등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급금으로 기재하였다가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식재산권으로 처리

③-2 산학협력보상비

산학협력보상금은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를 의미하는데 간접비수익이 아닌 수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연구수당이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 대비. 산학협력단 소유의 특허 등을 기술이전 하게 되어 발명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만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 및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재원에 따른 지식재산권 비용 및 연구자 보상비 구분」

구분	지식재산권 비용	연구자 보상비
간접비수익 외 수익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	산학협력보상금
간접비수익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출 원·등록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④ 학교시설 사용료 : 학교시설사용료는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대학은 산학협력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대학의 유·무형자산 이용에 대한 대가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⑤ 기타산학협력비와 기타지원비

기타산학협력비와 기타지원비는 각각 기타산학협력수익과 기타지원금수익을 재원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 계정에 대해서는 연구비와 같이 별도로 제시된 세목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설정가능한데 예를 들어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